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제안이유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기간이 2025.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적격자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역량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1)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면적	개소일	운영시간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시흥대로39길 46, 3층	110.09m ²	2021. 1. 20.	학기중 10:00~19:00 방학중 09:00~18:00

2) 위탁현황

가) 수탁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마을인성학교 (대표 : 엄성분)

나) 위탁기간 : 2020 11. 20. ~ 2025. 6. 30. (최초 위탁)

다) 운영인력 : 총 4명 (센터장 1, 전일제 돌봄교사 1, 반일제 돌봄교사 2)

라) 위탁예산 : 740,670천원 (국 99,971, 시 503,046, 구비 137,653)

※ 최초 위탁일 ~ 위탁만료 예정일 기준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5년 (2025. 7. 1. ~ 2030.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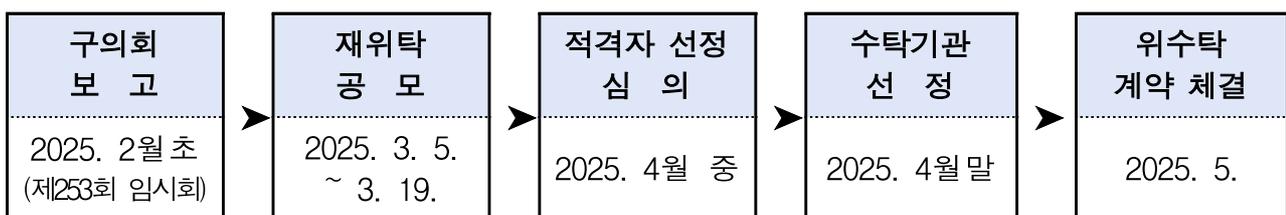
2) 위탁내용 : 금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가)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 나)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 다)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라)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마)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
- 4) 운영비 : 연 140,364천원(국 26,125천원, 시 66,071천원, 구비 48,168천원)
- ※ 2025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예산지원 기준에 따른 1년 단위 산출 예산

3. 재위탁 사유

- 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연령 아동의 방과 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공적 돌봄 수요 증대에 따라 설치된 초등돌봄시설로서,
- 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법령 및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 다.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거,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아동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4. 재위탁 추진일정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 돌봄센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 2, 3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1)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초등돌봄 환경에 관한 이해가 깊고, 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단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 설치기준

-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도서관·체육·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근로자복지·취업·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3 (구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